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14 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 : 엄태영 · 김태호 · 박형수

권영진 • 조지연 • 박덕흠

서천호 · 강명구 · 정동만
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러나 영세한 자영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(안 제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	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	②
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	
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	
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	<u>2028년</u>
<u>12월 31일</u> 까지 면제한다.	<u>12월 31일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